

●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08호**

개선권고 재결

2025년 12월 2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1월 16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-08호(개선권고 재결공고[동해해심 제2025-017호
(어선 청용호 잠수부사망사건)])**

사 건 명 : 어선 청용호 잠수부사망사건

피요청자 : 김**(****.*.*.)

강***** *** **

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청용호는 2024. 8. 1. 06:37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로부터 방위 약 122도, 거리 약 0.67마일 해상(북위 38도 20분 45초, 동경 128도 31분 37초)에서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

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청용호가 잠수작업 보조자 및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수기 어업을 하던 중 선장이 주기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며 잠수부에게 공기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잠수기 어업 시 ①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장, 잠수부, 잠수작업 보조자 등 3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고, ② 잠수용 공기호스로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잠수부에게 비상기체통을 지급하며, ③ 잠수부가 작업 중에는 잠수부의 위치와 공기호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, ④ 작업 중 부득이하게 주기관을 사용할 때는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하며 조심스럽게 주기관을 조작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따라서 귀하에게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